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 학위논문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자원학과

장 근 순

수산학석사 학위논문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암

이 論文을 水産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 년 8월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자원학과

장 근 순

이 논문을 장근순의 수산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08 년 8월 27일

주 심 수산학박사 남 기 완 (인)

위 원 농학박사 유 명 숙 (인)

위 원 수산해양학박사 김 수 암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평균연간어획량 산출 관련 규정	5
1. 어업손실보상	5
가. 어업손실보상의 정의	5
나. 평균연간어획량의 의의	6
다. 어업손실보상의 대상어업	6
2. 어업손실에 따른 평균연간어획량 산출규정	8
가. 어업손실액 산출기준	8
나.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 산출기준	10
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 산출방법	11
III.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14
1. 조사대상 물건 선정	14
가. 보상기준일	14
나. 유형별 조사대상 물건	15
다. 조사대상 관련 공부	17
2. 어획 실적 자료	20
가. 평가대상 기간	20
나. 어업실적 관련자료	21
3. 관련 자료들의 추가 고려사항	24

가. 위법한 어업행위	24
나. 겸업의 여부	24
다. 신뢰성 부족 및 허위자료 발급	26
IV. 개선방안	28
1. 평균연간어획량 추정방법 사례	28
가. ○○대교 사례1	28
나. ○○대교 사례2	29
2. 평균어획량 추정 공식	29
가.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30
나. 3년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31
3. 개선안 및 개선방향	31
가. 개선안	31
나. 개선방향	36
V. 결론	37
참고 문헌	40
ABSTRACT	42

표 차 례

표1. 3년 미만의 어획실적	11
표2.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12
표3. 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13
표4. 유형별 조사대상 물건	16
표5. 조사대상 관련 공부	18
표6. 연안어업 어업실적 자료	22
표7. 사례2 업종별 어획 어종비율	32
표8. ○○수협 해당연도 어획물 단가	33
표9. 사례2 어업피해조사 용역결과	34
표10. 평균연간어획량 추정	35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공익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병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의 건설 및 보수 등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항만의 확충과 발전소 건설사업 등과 같은 각종 해안관련 공익사업의 시행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사업시행지역 및 인근해역의 어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게 되었고, 주업으로 하는 수산자원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손실보상 문제가 대두되었다.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은 법규에 의해 실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의 대상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수산업법』에 정의되어 있다. 어업피해손실 산정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균연간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는 생산량을 의미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별표3에서 손실액 산출기준과 그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에 대해서 어업취소, 어업정지 및 어업제한의 3가지 어업처분 중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법시행령』이 정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기준으로는 실적자료와 실적기간이 제시되며 평균연간어획량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산출한다. 만약 보상대상처분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빙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실적을 같이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어업은 해당 면허, 허가, 신고를 해

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및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어업을 제외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보고하여야 할 어업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판매실적 및 판매기간에 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1995년도 이전에는 불법어업방지와 수산통계확보를 목적으로 어획물은 반드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상장제가 원칙이었으나, 그 후 생산지의 모든 수산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임의상장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통판매실적자료가 현재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연안어업은 이동성이라는 특수성과 대상물건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유형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들며, 대부분의 영세한 어가 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틀을 따르게 하는 현행의 법규로 비추어 볼 때 규격화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평가시 평균연간어획량 산정방법에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어업손실보상의 대상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안어업은 허가어업의 한 종류로서 영세한 어가 경영으로 인한 물건의 변동이 많으며, 이동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어업으로서 유형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들며,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이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증거서류에 따라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에 의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산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어업 피해용역조사를 하게한다. 이러한 조사는 어획실적 또는 판매실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타 어업증빙자료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처분대상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포함하고 관할수협에서 발행하는 위탁판매실적확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로서 당국에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증거서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계통판매 자료 중 어업인들의 개인 및 거래처 등의 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은 매매 판매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이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어업의 판매형태가 계통판매와 비계통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계통판매실적과 비계통판매실적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파악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본 논문은 그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안어업자가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획실적 자료가 없는 현행의 어업실태 및 판매형태를 조사하고 관련법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평균연간어획량 산출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또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 어업보상제도에 관한 기존의 저서와 관련법률, 논문 및 기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으며 현행 실시되고 있는 어획실적을 토대로 주요쟁점이 되는 현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서론 1장과 , 본론 2~4장, 마지막으로 결론 5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1장은 공익사업사업시행에 따른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에 관한 연구의 배경과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2장은 어업손실보상에 따른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에 관련된 관련법규 등을 제시하였고, 3장은 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 조사대

상 선정방법과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에 관련된 어획실적자료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고, 4장에서는 조사보고서 사례를 인용한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의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내린다.



Ⅱ. 평균연간어획량 산출 관련 규정

1. 어업손실보상

가. 어업손실보상의 정의

손실보상이란 함은 위법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 갚아주는 손해배상과 달리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 시에 따른 보상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의 절차 등을 통하여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에 관한 사업이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에 따르는 재산권의 수용 및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상의무를 법률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수산업법상의 수산업의 정의는 어업, 어획물운반 및 수산물 가공업을 말하며, 어업의 정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업의 종류로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3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어업손실보상이란 유동적인 수면을 대상으로 하며, 지면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 보상과는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필요에 의거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관청이 어업의 취소처분, 제한처분, 정지처분 등의 어느 한 가지를 전제로 하여 처분을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어업손실과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규정을 명문화 하여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 평균연간어획량의 의의

어업손실보상액은 기본적으로 평년수익액, 제한정도, 제한기간의 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¹⁾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²⁾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어업손실에 따른 평균연간어획량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하고 만약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으면 이를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되는 실적도 포함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별표3의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어업에 대해 어업취소, 어업정지 및 어업제한의 세 가지 어업처분 중에서 어느 한 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처분의 손실액도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연간어획량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액이 달라짐으로써 어업손실보상평가에 가장 핵심 되는 요인이라 하겠다.

다. 어업손실보상의 대상어업

어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산업법상 어업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먼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3종류가 있다.

- 1)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기산한 1년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
- 2) 보상액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 및 수심을 구획하여 수산동식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사업으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면허어업은 물권으로 하여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정하며,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 따라서 최대 20년까지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면허어업의 종류로는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등이 있다.

허가어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란 법률,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및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업면허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업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라 해당 어업을 함으로써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면에서 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³⁾. 따라서 허가어업의 폐지, 휴업 또는 피해에 대한 손실의 평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면허어업이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해 주는 어업인데 반해서, 허가어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업행위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주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허가어업의 종류는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등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제46조에 정의된 면허어업, 허가어업,

3) 대법원판결(1999.11.23, 98다11529)

시험어업⁴),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⁵)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어업이며 대부분 정착성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써 그 어구, 어업이 간단하고 소규모적인 것이 특징이며 어업의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이를 수리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수산어업시행령』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는 맨손어업, 나잠어업⁶), 투망어업등이 있다.

2. 어업손실에 따른 평균연간어획량 산출규정

가. 어업손실액 산출기준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은 법규에 의해 실시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광업권⁷),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인 어업보상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 4) 새로운 어구, 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어업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어업
- 6)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어업
- 7)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

를 보면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에 의한다. <개정 2005.2.5, 2008.4.18>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2.5, 2008.4.18>

③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5>

⑤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별표3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국에 보고 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하고 만약 보고 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으면 이를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되는 실적도 포함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어업에 대해 어업취소, 어업정지 및 어업제한의 세 가지 어업처분 중에서 어느 한 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업처분에 대한 손실액도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평년수익액의 산정근거는 평균연간어획량에 있다.

나.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 산출기준

앞서 언급하였듯이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하는 기준은 3년간의 실적자료와 실적기간에 있으며 부득이 이에 대한 3년간의 실제 자료가 미약하거나 없을시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에 의해 고안된 산출공식을 적용한다.

(1)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로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 동안(소급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 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함.)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그 밖에 『수산업법』 제32조에 따른 휴업, 태풍피해복구 등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간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2)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

어획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면허어업과 허가 및 신고어업을 구분하고 산출공식을 적용한다(표1).

면허어업과 허가 및 신고어업의 산출공식에서 실적기간은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으로 하되, 동일규모 또는 유사규모의 동종어업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실제어획실적을 말한다. 어획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을 원칙으로 하고, 어획물의 특성에 따라 생물중량 또는 건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김은 마른김 1속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을 내용물 중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생산고 조사요령의 수산물 중량환산 및 수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1. 3년 미만의 어획실적

종류 \ 공식	3년 미만의 어획실적
면허어업	당해 어장의 실적기간중의 어획량 × 인근동종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동종어업 어장의 당해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허가 및 신고어업	당해 어업의 실적기간중의 어획량 × 동일규모의 동종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 동일규모의 동종어업의 당해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다만 동일규모 동종어업의 어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규모의 동종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산출한다.

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 산출방법

(1)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법 제37조 제6호(법 제3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표2와 같은 방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한다.

표2.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처분 종류	어업손실액
취소	$\text{평년수익액} \div \text{연리}(12\text{퍼센트}) + \text{어선} \cdot \text{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도 적용함
정지	$\text{평년수익액} \times \text{정지기간} + \text{시설물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 \cdot \text{수거등에 소요되는손실액} + \text{어업의 정지기간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경비}$ 8) 다만, 취소의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 및 신고어업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법 제37조 제6호(법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표3과

8) 어업의 정지기간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 또는 어선, 어구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같은 방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한다.

다만, 법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법 제4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함.)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한다.

표3. 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처분	종류	어업손실액
취소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정지		평년수익액 ×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 기간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취소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어선의 계류도 포함한다.
제한		어업의 제한기간이나 제한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1. 조사대상 물건 선정

가. 보상기준일

우리나라의 보상법률은 사전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연안어업의 어장이 피해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어업손실보상 조사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안어업어장의 해양환경변화는 4계절로 뚜렷하고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여 조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지구 밖의 피해예상지역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측과 어민들간의 약정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른다. 따라서 조사대상 물건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기준일을 설정하여 정당한 어업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의 물건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상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어업권의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였고, 『어업권등 보상평가 지침』 제4조의 기준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하여 보상기준일로 결정하고, 차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보상이나 사업구역의 확장 및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경우 보상기준일이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로 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 변경고시일이나 사업시행자와 어민간의 약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업손실보상기준일이란 공익사업시행지구 및 그 인근까지 미치는 피해범위에 포함되는 연안어업의 어장에 조업하는 어업인들에 대해 어업손실보상 대상물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나. 유형별 조사대상 물건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연안어업의 어업피해는 일정한 범위를 선정하여 피해범위가 설정되는 토지와 달리 유동적인 수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영향범위가 조사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피해수역과 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예상수역의 구분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조사대상 물건을 정하기가 어렵고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이 광역지역단체의 연해로 표기되어 있는바 조업구역과 피해지역이 사실상 원거리에 있거나 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물건 선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연안어업은 영세한 어가 경영의 형태로서 타지로부터의 전입과 전출, 유효기간의 만료, 어선의 매매, 폐선, 신조 등 허가 변동의 어업처분이 무단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업유효기간이 5년마다 갱신되는 연안어업 특성상 만료된 어업과 갱신된 어업이 보상기준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 물건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의 목적이 아니라 어민의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어업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의 허가를 폐지하고 같은 관할구역의 피해예상지역 밖에서 어선을 취득하여 신규허가를 취득 한 경우 비록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보상의 목적인 사실상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사유재산을 구제할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CASE 3

연안어업은 금지된 것을 해지하는 허가어업의 한 종류로서 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마다 갱신되며, 어업피해 기간 동안 어선의 등록사항(주소, 선명, 톤수, 기관 등), 또는 어업허가사항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어업허가사항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정한 범위내의 어업허가의 유예(취소포함), 어선의 소유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유예기간 만료일부(30일 이내) 새로운 허가를 보상기준일 이후 신청한 경우로 이전 허가 처분사항과 현재 허가처분사항 등의 연속성이 파악되면 조사대상 물건에 포함 한다.

(4) CASE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피해예상지역 안의 연안어업의 어장으로써 어업유효기간이 보상기준일을 포함하고 어업처분의 허가내용이 적법한 정상적인 어업활동으로 보상대상선정 물건에 포함된다.

다. 조사대상 관련 공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연안어업의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조사대상 물건의 어업처분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어민들에게 공부상의 문서를 요구해야 한다. 연안어업은 금지된 것을 해지하는 허가어업의 한 종류로 권리를 주장하는 면허어업과 달리 어선을 기준으로 하는 대물허가로써 연안어업의 허가상의 어

업처분내용 및 변동사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현재 어업활동행위가 다르면 불법어업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된 조사대상 관련 공부를 파악하여 조사대상물건에 대해 조업 여부와 그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공부자료와 자료발행처는 표5와 같으며, 각 제시된 공부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조사대상 관련 공부자료

공부자료	자료 발행처	비고
어업허가증	시·군청	어업처분내용
어선원부	시·군청	소유자
선박검사증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의 안정성 여부
선적증서	시·군청	어선건조 및 등록사항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시·군청·면사무소	소유자 정보
어업허가대장(원본대조필)	시·군청	이전어업처분 내용 확인

(1) 어업허가증

연안어업의 어업허가증은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및 『수산업법』 제43조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사용어선을 변경하거나 그 제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허가증이 변경된 어선에 맞추어 갱신 발급된다.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어선은 사용이 허가된 어선을 나타낸다. 만약 다른 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한다면 이는 위법한 어업행위가 되므로 현재의 어업허가증에는 어업유

효기간이 명시되고 보상기준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정보, 어선정보 및 조업에 대한 해당어업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 물건 선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어업허가증에는 사용허가어선의 정보, 허가번호,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포물의 종류, 허가기간 및 기타 제한 또는 조건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어선원부 및 선적증서

어선원부 및 선적증서는 『어선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증서로써, 연안어업의 어선의 소유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을 등록 하여야 한다. 이는 어선의 건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어선의 소유자 및 어선의 등록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대물허가인 연안어업은 선적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번한 어선의 변동사항과 어선원부등을 통하여 소유자등을 파악하여 조사대상 물건에 적합한지 어업허가증, 어업허가관리대장 등과 비교하여 조사대상 물건을 파악해야 한다.

(3) 선박검사증 및 어업허가관리대장

선박검사란 건조중이거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선박의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이나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체기관 및 시설 등의 구조, 배치, 재료, 규격 등이 『선박안전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며,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정된 용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따라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업허가대장이란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어업 처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별지15호)로써 이전의 어업허가처분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보상기준일 이후의 어업유효기간을 가진 해당어업에 대해서 보상기준일 당시의 어업처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2. 어획실적 자료

가. 어업실적 평가대상 기간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별표3은 평균연간어획량을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간의 어획량의 연평균한어획량으로 정의하고, 만약 소급기산한 3년 동안에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해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 어장정비 등의 사유로 인해 어획실적이 없어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의 어획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년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간의 어획량을 연평균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기 위해 3년을 특정 하는 근거로서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을 명시하고, 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실적 평가대상 기산한 3년을 특정 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급기산한 3년 동안에 변동 폭이 1.5배 이상인 년도가 있으면 이 변동이 일시적인 해양환경 변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어획실적이 없는 사유가 관련 법규에 의해 신고되었거나 휴업 또는 어장 정비 때문인지, 행정관청이 인정한 태풍 등 재해로 인한 것인지, 혹은 이러한 모든 사유와 상관없는 순전히 어떤 개인 사정 때문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 어업실적 관련자료

평균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은 『수산업법』 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산출하되 만약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추가된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빙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실적을 같이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은 조업상황,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및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어업의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⁹⁾에 면허어업과 한정어업으로 정해져있으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보고 하여야 할 어업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연안어업의 경우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할 어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어업실적관련 자료는 표6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과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9) 제47조 (자원의 조사 및 보고) ①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어업은 법 제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 및 법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어업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는 양식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로 하고, 양식어장의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양식기간 동안 1회로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2회 이상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르고, 보고의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을 거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표6. 연안어업 어업실적 자료

어업실적 관련 자료	자료 발행처	기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관할 수협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 분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간
면세유류구입확인서	관할 수협	
어선출입항신고서	관할 해경	
어업소득신고서	관할 세무서	
기타 증빙자료	개인 및 거래처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어업손실보상평가서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은 어디까지나 어획실적에 의해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생각하면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서는 공신력이 있는 수협에서 발행하는 위탁판매실적확인서이다. 하지만 과거 강제상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5년부터 임의상장제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물의 상당부분을 계통판매 대신에 사매매에 의존하는 현실이지만 계통판매 실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어촌계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의 경우는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자료와 같은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2) 면세유류구입확인서

연안어업중 동력선을 이용하는 경우 기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어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면세유의 구입실적확인서를 통해서 어업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하지만 구입한 기름이 전량 모두 해당 허가어업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의 보고가 누락될 수 있다. 또한 무동력선인 경우는 면세유류구입

실적이 없어 면세유류구입확인서는 100%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어업의 유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어선출입항신고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하면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 어촌계에는 대략 여러 개의 선착장이 있고 어선들은 어민들 마을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있어 선적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신고기관의 출입항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몇몇 어촌계에는 출입항신고서가 없이 대행신고서가 운행되어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출입항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신력이 있는 해경에서 발행하는 출입항신고서의 경우는 어민들의 조업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4) 어업소득신고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허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무서에 소득신고서를 함으로써 수입이 정식으로 신고 된다. 이에 어업소득신고서는 세금까지 부과된 공신력 있는 소득증빙 자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영세하여 소득신고자료가 미비하고 간혹 소득신고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어업의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에 대한 신고도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내용의 진위와 증명서 발급사실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을 거쳐야 한다.

(5) 기타 증빙자료

어획실적의 매매거래를 입증할 자료로는 개인 및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어대금 온라인입금 거래통장기록, 회계장부, 거래처영수증 등이다. 하지

만 자료에 이들 증빙내용의 진위와 증빙서 발급사실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을 요하며, 수협이 영어자금대출확인서나,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간접적으로 어업활동의 유무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3. 관련 자료들의 추가 고려사항

가. 위법한 어업행위

연안어업은 사용어선을 어업허가증에 명시하고 소유자가 사용어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업허가증이 변경된 어선에 맞추어 갱신 발급받으며, 또한 사용어선의 제원에 변경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어업허가증에 등록된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한다면 위법한 어업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조사 시 어선의 어업허가증 상의 내용과 어선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업허가증에는 어장의 위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포획, 채취, 양식 또는 생산종묘의 생물 종류를 기재하는 란을 두고 있다. 이는 어업허가증상에 명시된 생물 중 이외의 어종을 어획하거나, 보다 유리한 어구 및 조업구역 밖에서의 조업과 같이 위법하게 어업을 한 어업인이 적법하게 어업행위를 한 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결업의 여부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

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써 대부분 영세하다. 따라서 일부 연안어업인의 경우 직장, 농업, 연안어업 이외의 어업을 겸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추정할 경우 어업에만 종사하는 어업인들과는 차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직장인 및 농업에 종사

일부 어업인의 경우는 농사 및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업을 병행하여 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연안어업에만 전업하는 어민들과의 차등을 위해서 농사여부와 직장인 의료보험증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여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2) 낚시어선업을 하는 어선

『낚시어선업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에 제정되었다.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수, 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어선업은 『낚시어선업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안어업인은 연안어업의 사용어선을 가지고 주말에는 인근의 도시로부터 오는 낚시꾼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하지만 낚시어선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정의된 어업이 아니고 소요되는 연료유는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안어업을 하면서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구입한 면세유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고 낚시어선업을 목적으로 출항하면 출입항신고서에 그 목적과 낚시장소와 승

선자 명단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출입항일수와 면세유 구입량에 근거하여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하게 될 경우에는 출항의 목적별로 출항일수와 면세유 사용량을 구분하여 어획량을 산출하여야 마땅하다.

(3)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어선

관리선 사용 지정증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자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선 사용 지정은 연안어업의 허가를 취득한 어업의 경우 관리선 사용 지정을 하여 겸업을 하고 있으므로 관리선이 소지하는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들 어선은 평균연간어획량 추정시 연안어업에만 전업하는 어선과 구분하여 면세유류 사용량 및 출입항일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신뢰성 부족 및 허위자료 발급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에서 어업실적을 증빙하는 자료에는 어획실적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가 있다. 어획실적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수산업법』 제75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자료다. 하지만 연안어업은 직접적으로 당국에 보고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어서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시 순전히 어획실적에 의해 산출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는 어업소득신고서의 경우 해당어업 뿐만 아니라 다른 어업의 소득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위판실적확인서의 경우는 연안어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비계통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관실적에 대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면세유류구입확인서의 경우 일부가 어업인의 자가용 차량연료, 난방, 또는 농업 등 어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혹 타인의 면세유를 차용하여 조업함으로써 면세유류 구입실적에 비해 출어일수가 현저하게 많은 예가 발생한다. 어선출입항신고소에 비치된 일지의 경우 타 목적의 출입항 일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항 신고소의 경우 선박출입항 실적을 높이기 위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증빙자료는 어획실적을 간접적으로 증빙하는 내용으로서 이들 자료들에 대해서 증빙내용의 진위와 증명서 발급사실 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IV. 개선방안

1. 평균연간어획량 추정방법 사례

가. ○○대학교 사례1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추정의 방법으로 표본 어선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일평균어획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어업처분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조업실적자료(위탁판매 실적자료, 면세유류 구입실적 자료, 출입항신고 실적 자료)를 근거로 조업일수를 산출하였다.

어선은 크기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등급별로 구분하였으며 자료는 공식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되는 수협 및 해양경찰대에서 작성한 자료에 한정하여 조사기간 중 마산수협에서 발행한 위탁판매실적 자료와 면세유류 구입실적 자료, 그리고 해양경찰에서 발행한 출입항신고 실적 자료를 어선별로 제출받았다.

많은 어민들이 사매매실적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매매실적은 조작의 가능성이 큰 관계로 대부분의 사매매 실적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예 어민들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

어선별 평균연간어획량(Y_i) 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정하였다.

$$Y_i = Y_d \times D_i$$

여기서 Y_d 는 일평균 어획량이며, D_i 는 어선별 연평균 조업일수이다.

나. ○○대교 사례2

어선별 연간평균생산액을 산정하기 어촌계별로 계통판매하고 있는 어업건자 중에서 복합어업, 자망어업, 통발어업의 업종별로 조업하는 어업인을 표준어선으로 선정하여 연별, 월별, 일별, 어종별 위판량 및 위판액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연평균 생산량의 기초 자료로 전체업종에 대한 3년간 평균 위판액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의한 연평균생산액 및 생산량을 가중평균치를 적용하여, 위탁판매실적과 설문조사에 의한 생산액과 생산량의 평균치로 연평균어획량을 추정하였다.

조사대상 어선의 연평균어획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2003년~2005년)의 대상별 위탁판매실적·비위탁판매실적 자료와 면세유류 구입실적 자료 및 생산량 관련 자료를 개인별로 요청하여 개인별 최종조정지수를 추정하는데 이용하였다. 개인별 최종조정지수는 최근 6년간(2000~2005년)의 어선별 위탁판매실적 자료와 면세유류 구입실적 자료를 사용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어선의 생산성 지수, 톤급별 생산지수, 위판 실적, 설문지 실적, 유류 실적, 평가지수 및 타 업종과의 겸업여부에 대한 지수로부터 구하였다. 그 중 표준어선의 실적(2003~2005년)을 이용하여 추정한 표준 어업생산량과 개인별 최종조정지수를 사용하여 연평균생산량을 구하였다.

$$\text{어선별평균어획량} = \text{연평균어획량} \times \text{개인별최종조정지수}$$

2. 평균연간어획량 추정 공식

평균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국에 보고 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산출한다고 하였으나 연안어업

은 당국에 보고된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포함한다. 따라서 『수산업법시행령』 별표3에 의한 평균연간어획량의 추정 공식은 아래와 같다.

가.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 동안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하며, 소급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 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연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 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 동안의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휴업, 태풍피해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의 기간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따라서 아래의 식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어획실적자료가 3년(t_0 년도, t_0+1 년도, t_0+2 년도)의 각 연도(i)의 연간어획실적을 y_i 라 한다면 아래의 식으로 평균연간어획량(\bar{Y})을 산정할 수 있다.

$$\bar{Y} = \frac{1}{3} \sum_{i=t_0}^{t_0+2} y_i \text{ ----- 식1)10)}$$

10)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006.2), 마창대교건설사업 어업보상을 위한 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 식 35.1 p.-876 "

나. 3년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어업의 실적기간 기간 중의 어획실적자료가 있는 동종어업을 통상적으로 2건을 선정한다. 동종어업이라 함은 먼허어업의 경우에는 인근 동종어업을 가리키고,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은 동일규모 또는 유사규모의 동종어업을 가리킨다. 2건의 동종어업이 선정되면 당해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에 동종어업의 3년 평균어획량을 곱하고 동종어업의 당해 실적기간중의 어획량을 나누어 연간평균어획량을 산출한다. 즉 당해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을 y , 동종어업(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연간어획량을 각각 Y_1^\ddagger 와 Y_2^\ddagger , 동종어업의 당해실적기간중의 어획량을 각각 y_1^\ddagger 와 y_2^\ddagger 라 한다.

$$\bar{Y} = y \times \frac{(Y_1^\ddagger + Y_2^\ddagger)}{(y_1^\ddagger + y_2^\ddagger)} \quad \text{식2)11)}$$

3. 개선안 및 개선방향

가. 개선안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평균연간어획량 추정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실시되나 그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사업일지라도 조사자마다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사례1과 사례2처럼 각각 다르게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업증빙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이

1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006.2), 마창대교건설사업 어업보상을 위한 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 식 35.3 p.-877 ”

되는 자료로는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면세유류구입확인서, 출입항신고실적 등이며 이들 자료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수협과 해경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써 어업유무 및 당국에 보고된 이상의 어업실적에 해당하고 수산물의 유통이 전량 계통판매와 비계통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이용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의 표7은 사례2에 적용된 ○○대교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의 용역결과 업종별 어획 어종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7. 사례2 업종별 어획 어종비율

어종/업종	복합	자망	통발	평균
도다리	43.46	39.46	48.26	43.72
잡어	33.80	38.85	16.06	29.57
장어	2.52	0.04	18.25	6.94
메기	0.83	0.06	14.58	5.16
진어	0.29	13.93	0.00	4.74
노래미	8.41	3.22	2.27	4.63
낙지	7.11	1.28	0.00	2.80
돔	2.04	1.94	0.58	1.52
문어	1.53	0.00	0.00	0.51
숭어	0.01	1.22	0.00	0.41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계통판매의 연간실적은 통상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를 중량 즉 어획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판매금액을 어획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해당연도의 업종별 어획 어종비율을 이용하여 어획물판매단가를 적용한다. 하

지만 표7의 경우 어획 어종이 다양하지만 도다리 및 기타 잡어의 비율이 2/3 이상의 어종비율을 구성하고 있어 대표어종으로 선택 50:50의 비율로 가정하여 당해수협의 해당 어획물에 대한 당해 연도의 연간 어획물 평균단가(표8)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8. ○○수협 해당연도 어획물 단가

구 분	가자미류(원)	기타어류(원)	비 고
2000년	4,578	1,489	해당수협의 계통판매고
2001년	10,947	1,217	
2002년	9,598	1,269	
2003년	6,952	4,023	
2004년	7,107	3,456	
2005년	3,827	3,126	
합계(원)	7,168	2,430	
어획물평균단가(위)		4,779	가중평균

최근 6년간 자료 사용: (2000~2005년)

다음 표9는 사례2에 적용된 ○○대교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의 용역결과 어촌계별, 어선별 표본을 선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료1은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통한 평년위탁판매실적을 나타낸 것이며 자료2의 경우는 어획실적자료등을 이용하여 개인별 평균연간어획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9. 사례2 어업피해조사 용역결과

연번	어촌계	톤수	허가업종	자료1(원)	자료2(kg/yr)
1	A	1.03	연안복합	24,393,200	6,109
2	B	4.2	연안통발 연안복합	29,441,167	9,403
3	B	1.99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13,496,733	7,498
4	B	0.92	연안자망	17,444,033	6,768
5	C	1.73	연안통발 연안자망	32,435,583	7,773
6	D	5.43	연안통발 연안복합	44,908,750	11,134
7	D	4.99	연안통발 연안자망	42,869,540	11,079
8	D	2.45	연안통발 연안자망	13,173,500	7,809
9	D	3.95	연안통발 연안복합	40,643,838	10,525
10	D	3.3	연안통발 연안자망	36,773,200	9,485

자료1: 평년위관실적(2000~2005)

자료2: 어선별 평균연간어획량

표9에서 얻은 자료1은 주로 계통판매를 위주로 조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표본으로부터 계통판매실적만을 이용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여 사례2의 용역결과 추정된 평균연간어획량과 비교하기로 한다.

우선 자료1의 평년어획실적금액을 어획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자료2에서 사용된 계통판매실적의 해당년도 해당수협의 계통판매고인 표8의 어획물평균단가를 표7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어종으로 추정한 어종에 적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 아래의 표10 자료3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표10. 평균연간어획량 추정

연번	어촌계	자료1(원)	자료2(kg/yr)	자료3(kg/yr)	차이(kg/yr)	비율(%)
1	A	24,393,200	6,109	5,083	1,026	17%
2	B	29,441,167	9,403	6,135	3,268	35%
3	B	13,496,733	7,498	2,812	4,686	62%
4	B	17,444,033	6,768	3,635	3,133	46%
5	C	32,435,583	7,773	6,759	1,014	13%
6	D	44,908,750	11,134	9,358	1,776	16%
7	D	42,869,540	11,079	8,933	2,146	19%
8	D	13,173,500	7,809	2,745	5,064	65%
9	D	40,643,838	10,525	8,469	2,056	20%
10	D	36,773,200	9,485	7,663	1,822	19%
평균		29,557,954	8,758.3	6,159.2	2,599.1	31.2%

자료1: 평년위관실적(2000~2005)

자료2: 어선별 평균연간어획량

자료3: 위관실적에 의한 평균연간어획량

자료3에서 나온 결과는 자료2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대부분의 연안어업은 100%로 계통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통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같은 어촌계에서라도 개인별로 각각 다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평균연간어획량은 계통판매실적과 비계통판매실적을 각각 개인별로 확인하여 식3)을 통해서 평균연간어획량을 추정할 수 있다.

계통판매실적 어획실적자료가 3년(t_0 년도, t_0+1 년도, t_0+2 년도)의 각 연도(i)의 연간어획실적을 a_i 라 하고, 비계통판매실적(사매매)의 어획실적자료가 3년

(t_0 년도, t_0+1 년도, t_0+2 년도)의 각 연도(i)의 연간어획실적을 b_i 라 한다면 아래의 식으로 평균연간어획량(\bar{Y})을 추정할 수 있다.

$$\bar{Y} = \frac{1}{3} \sum_{i=t_0}^{t_0+2} a_i + \frac{1}{3} \sum_{i=t_0}^{t_0+2} b_i \text{ ----- 식3)}$$

나. 개선방향

관련법규에 의한 평균연간어획량 추정은 어디까지나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 등을 이용하거나,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어업은 허가어업의 한 종류로서 당국에 보고해야 할 실적에 대한 관련법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당해연도의 어민의 평균연간생산액은 계통판매액과 비계통판매액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계통판매실적과 비계통판매실적은 당국에 보고된 이상의 실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균연간어획량은 계통판매실적과 비계통판매실적을 파악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995년부터 수산물유통구조가 강제상장제도에서 임의상장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비계통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증빙내용의 진위와 발급사실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계몽과 면세유통구입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계통판매형태로 수산물 유통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산물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평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실시되고 유동적인 수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토지보상평가와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필요에 의거 해당어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관청이 어업의 취소처분, 제한처분, 정지처분 등의 어느 한 가지를 전제로 하여 처분을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어업손실과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법률 조문에 명시하여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업손실에 따른 평균연간어획량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하고 만약 보고된 실적 이상의 추가된 어획실적 등이 있으면 이를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되는 실적도 포함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별표3의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어업에 대해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처분의 손실액은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연간어획량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액이 달라짐으로써 어업손실액보상평가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연안어업은 어업손실보상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허가어업의 일종으로서 법률,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라 해당어업을 행함으로써 재산적인 이익은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허가어업의 폐지·휴업 또는 피해에 대한 손실의 평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보상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어업의 어업피해는 일정한 범위를 선정하여 피해범위가 설정되는 토지와 달리 유동적인 수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영향범위가 조사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피해수역과 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예상수역의 구분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이 광역지역단체의 연해로 표기 되어 있는 바 조업구역과 피해지역이 사실상 원거리에 있거나 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물건 선정을 요구하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연안어업은 영세한 어가 경영의 형태로써 타지로부터의 전입과 전출, 유효기간의 만료, 어선의 매매, 폐선, 신조 등 허가 변동의 어업처분이 무단하게 발생하여 어업보상대상 선정 및 어업실적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어업손실보상평가에 따른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출 기준 및 방법으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별표3에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간의 어획량의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정의하고, 만약 소급기산한 3년 동안에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해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 어장정비 등의 사유로 인해 어획실적이 없어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의 어획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년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간의 어획량을 연평균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기 위해 3년을 특정 하는 근거로서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을 명시하고, 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실적 평가대상 기산한 3년을 특정 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평균연간어획량 추정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실시되나 그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자마다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다르며 분명히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이 어획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관련법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관련 자료의 부재이지만 당해연도의 어민의 평균연간생산액은 계통판매액과 비계통

판매액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계통판매실적과 비계통판매실적은 당국에 보고된 이상의 실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균연간어획량은 계통판매실적과 비계통판매실적을 파악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어획물의 상당 부분을 계통판매대신에 비계통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비계통판매의 유통구조를 계통판매의 유통구조로 유도하는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규에 의해서 실시되는 평균연간어획량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며 현재 실시되는 어업손실보상평가의 연안어업 중심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정방식의 법규상 문제점과 기존 연구보고서의 사례 등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많은 연안이 개발되게 된다. 따라서 어업보상평가에 따른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정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관련법규의 제정과 신뢰성있는 객관적인 자료수집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용주 · 김기수 · 이성백 (2007. 6), 통계학적 접근에 의한 연안어업의 조업어장 위치 및 범위결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8권 제1호
- 강용주 · 김기수 (2006. 6),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범위와 정도 및 어업처분을 결정하는 표준화 방안의 적용사례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1호
- 강용주 · 김기수 (2005. 6), 양식어업손실액산출과 관련한 인근동종어업의 선정요건에 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제36권 제1호
- 강용주 · 김기수 (2004. 10),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추정의 새로운 접근, 수산연구, 21호
- 강용주 · 김기수 · 장작익 · 박청길 · 이종섭 (2004. 6),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범위와 피해정도 추정의 새로운 통계학적 접근, 수산경영론집, 제35권 제1호
- 강제석 (2003), 어업보상평가론, 도서출판 연화기획
- 김기대 (2000. 2), 먼허어업취소에 따른 손실보상평가 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자원학과 석사 학위 논문
- 김용춘 (2006. 8), 어업 손실보상제도상 총유재산 분배문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산업경영학과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2007. 11), 마산만 횡단도로(마창대교)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최종보고서)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006. 2), 마창대교건설사업 어업보상을 위한 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
- 서상복 (2001. 2), 내수면어업 중 육상 사유수면어업의 손실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자원학과 석사 학위 논문
최임근 (2000. 02), 연안어업 손실보상평가에 있어 최소보상액 기준결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자원학과 석사 학위 논문
최임근 (2005. 11), 어업손실보상제도 및 주요쟁점 고찰, 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
경남지사 제4차 한·일 보상업무관련 합동세미나 발표 논문
황갑수 (2002), 수산업법상의 어업손실보상, 해양수산법제, 통권9호 (2002. 7)
황기형·주문배 (2004. 12), 어업 모니터링체제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4-21



A Study on Method for Calculating Average Annual Catch in Coastal Fisheries
after Public Utilities Enforcement

Jang, Kun Soon

Department of Biological Resource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recent times, Korean economy has remarkably developed. The high economic growth made public utilities related to the coast active. For example, many coasts are under development, lots for industries and harbors are expanded and power plants are built.

However, these public utilities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marine life devastation, air pollution. Moreover, fishermen lost their livelihoods and they can not take advantage of fishery resources any more as much as they did in the past. Consequently, they are now demanding compensation for their all damages and the government tries to compensate for their losses.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is carried out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The average annual catch in coastal fisheries is calculated based on reported the result of catch, the amount of breeding or the result of sales.

If a fisherman who is supposed to be rewarded can prove that he/she caught more quantity of fish by submitting document evidence, the proved result should be included.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which enforces Licensed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ies to report the result. For that reason, it is difficult to collect objectively reliable data regarding sales figures and periods in Licensed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ies.

In addition, business deals owing to removal of residence, expiration of validity, sales of fishing boats, abandoned boats and newly made boats among fishermen frequently happen in the coast. The fact causes many objects of the coast fisheries to undergo a change a lo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government decides on a date for compensation. The fishermen who fished for a living before the date can receive compensation. The government pays compensation for the average annual catch for the last three years.

As I mentioned abo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coast fisheries because there are various changes. Besides, most of the coast fisheries are small business. They are not specified to report their result. It is important to collect data indirectly related to the result of fishing based on this circumstance.

In this study, I explain that current regulations have a limit to apply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average annual catch in coastal fisheries. I also discuss that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showing past result of fishing and to make the best use of them.